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6. 7. 1.>

[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 [ ]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취득 신고서

※ 2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같은 사람의 4대 사회보험 각각의 자격취득일 또는 월 소득액(소득월액, 보수월액, 월평균보수액)이 서로 다른 경우 줄을 달리하여 적습니다.

(5쪽 중 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고용·산재보험은 5일)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단위사업장 명칭
	소재지	영업소 명칭	
	전화번호	우편번호( )	
보험사무 대행기관	번호	명칭	팩스번호
			하수급인 관리번호(건설공사 등의 미승인 하수급인만 해당합니다)

구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국적 체류 자격	대표자 여부	월 소득액 (소득월액·보수월 액·월평균보수액) (원)	자격 취득일 (YYYY. MM.DD)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산재보험					
						자격 취득 부호	특수 직종 부호	직역 부호	자격 취득 부호	보험료 감면 부호	공무원·교직원 회계명 /부호	직종명 /부호	직종 부호	1주 소정 근로 시간	계약 종료 연월 (계약직만 작성)	보험료 부과구분 (해당자만 작성)	
																부호	사유
1			[ ]예 [ ]아니오			[ ]국민연금 ([ ]취득 월 납부 희망)			[ ]건강보험 ([ ]피부양자 신청)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 ]예, [ ]아니오) [ ]산재보험				
2			[ ]예 [ ]아니오			[ ]국민연금 ([ ]취득 월 납부 희망)			[ ]건강보험 ([ ]피부양자 신청)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 ]예, [ ]아니오) [ ]산재보험				
3			[ ]예 [ ]아니오			[ ]국민연금 ([ ]취득 월 납부 희망)			[ ]건강보험 ([ ]피부양자 신청)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 ]예, [ ]아니오) [ ]산재보험				
4			[ ]예 [ ]아니오			[ ]국민연금 ([ ]취득 월 납부 희망)			[ ]건강보험 ([ ]피부양자 신청)				[ ]고용보험(계약직 여부: [ ]예, [ ]아니오) [ ]산재보험				

위와 같이 자격취득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용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첨부 서류	국민연금	임금대장 사본 또는 선원수첩 사본 등 특수직종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얻으려는 사람이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의2 및 같은 영 별표 4의3에 따른 자료의 제공 요청을 통해 공단이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가. 재외국민: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본 1부 나.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사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증 사본(「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만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유의사항**

건강보험	1. 피부양자가 있을 때에는 제5쪽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피부양자가 있는 경우)를 작성하기 바랍니다. 2. 건강보험증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신청하는 경우 발급됩니다. 신청은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거나 고객센터(☎1577-1000), 홈페이지(www.nhis.or.kr), 모바일앱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 산재보험	1. 임의가입대상인 외국인 및 공무원은 “외국인(공무원) 고용보험 가입·가입탈퇴 신청서”를 작성하기 바랍니다. 2. 1쪽의 신고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포함)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신고 등으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지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

공통사항	1. 신고대상 가입자 또는 근로자별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취득 및 고용 여부에 관하여 해당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2.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3. 자격취득일란에는 해당 사업장의 채용일 등을 적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자격취득 사유가 사업장 전입인 때에는 상대 사업장에서의 전출일과 같은 일자를 적습니다. 4.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 및 체류자격(외국인등록증 적은 내역)을 적습니다.
국민연금	1. 특수직종부호는 해당 근로자가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의 종사자인 경우에는 “광원”에 해당하는 부호를 적고, 「선원법」 제2조에 따른 선박 중 어선에서 직접 어로작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부원”에 해당하는 부호를 적습니다. 2. 국민연금의 경우 18세 미만의 근로자도 사업장가입자입니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취득일이 1일인 경우를 제외하고, 취득월의 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 ]취득 월 납부 희망”의 “[ ]”에 “√” 표시를 합니다. 4.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직역연금 가입자 또는 퇴역연금, 퇴직연금 등을 받거나 받을 권리를 얻은 자는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건강보험	공무원·교직원의 경우에만 회계명, 회계부호, 직종명, 직종부호를 적습니다.
고용보험 · 산재보험	1. 산재보험 관리번호와 고용보험 관리번호가 다른 경우에는 신고서를 각각 작성해야 합니다(예수인 및 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식으로 신고합니다). 2. “월평균보수액”은 연도 중에 월별로 지급이 예상되는 평균 보수액을 적습니다(입사 이후 1년 간 지급이 예상되는 보수총액을 예상 종사개월수로 나눈 금액을 적습니다). - 근로자의 보수: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같은 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연말정산에 따른 갑근세 원천징수 대상 근로소득과 동일) 3. “1주 소정근로시간”은 주 소정근로시간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을 적습니다. 4. 피보험자의 계약직 종사자 여부에 대해 “[ ]”에 “√” 표시를 하고, 계약직 종사자인 경우에는 예정된 계약 종료 연도와 월을 적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계약 종료일이 속한 월을, 건설공사기간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예상 공사 종료일이 속한 월을, 사업이나 특정업무를 완성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예상 완성일이 속한 월을 적습니다. 5. 보험료 부과구분의 부호 및 사유는 3쪽 하단의 표를 참고하여 해당하는 사람만 작성합니다(부호란에는 해당하는 부호를, 사유란에는 대상 종사자에 해당하는 번호를 적습니다).

자격취득 부호 등

**국민연금**

[자격취득 부호] 01. 18세 이상 당연취득(「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나목에 따라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근로시간이 일정수준 이상으로 근로자에 포함되는 사람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03. 18세 미만 취득  
 09. 전입(사업장 통·폐합) 11. 대학강사 12. 60시간 미만 신청 취득(근로자 본인이 원하고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적으시기 바랍니다)  
 14. 일용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 등(「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나목 및 같은 조 제4호라목에 따라 1개월 동안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근로자에 포함되는 사람만 해당합니다)  
 15. 상실취소(착오나 사정변경으로 한 자격상실 신고를 취소하는 경우)

[특수직종 부호] 1. 광원 2. 부원

[지역연금 부호] 1. 지역연금(「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연금) 가입자  
 2. 지역연금(「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연금) 수급권자

**건강보험**

[자격취득 부호] 00. 최초취득 04. 의료급여 수급권자등에서 제외 05. 직장가입자 변경 06. 직장피부양자 상실 07. 지역가입자에서 변경 10. 국가유공자 등 건강보험 적용 신청  
 13. 기타 14. 거주불명 등록 후 재등록 29. 직장가입자 이종가입 30. 상실취소(착오나 사정변경으로 한 자격상실 신고를 취소하는 경우)

[보험료 감면 부호] 11. 해외근무(전액) 12. 해외근무(반액) 21. 현역 군 입대 22. 상근예비역(현역 입대) 24. 상근예비역(근무) 31. 시설수용(교도소) 32. 시설수용(기타)  
 41. 섬·벽지(사업장) 42. 섬·벽지(거주지) 81. 휴직

[직종 부호] 4쪽의 별지[한국고용직업분류(KECO, 2025) 중 소분류(140개) 직종현황]를 참고하여 적습니다.

**[보험료 부과구분 부호]**

부호	부과범위				대상 종사자	부호	부과범위				대상 종사자
	산재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임금채권부담금	실업급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산재보험	임금채권부담금	실업급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51	O	O	x	x	09. 고용보험미가입 외국인근로자 10.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11. 항운노조원(임금채권부담금 부과대상)	55	x	x	O	O	05. 국가기관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 06. 「선원법」 및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적용자 07. 해외파견자(「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람)
52	O	x	x	x	03. 현장실습생(「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제1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현장실습생) 13. 항운노조원(임금채권부담금 소송승소)	56	x	x	O	x	16. 노조전임자(노동조합 등 금품 지급)
54	O	x	O	O	22. 자활근로종사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4조의2에 따른 급여의 특례에 해당하는 사람, 차상위계층, 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	58	O	x	x	O	21. 자활근로종사자(생계급여 수급자)
						60	O	O	x	O	27.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당연적용대상)

고용보험  
·  
산재보험

0.경영·사무·금융·보험직	2. 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직 및 군인	52. 여행·숙박·오락 서비스직	82. 금속·재료·설치·정비·생산직 (판금단조주조용접도장 등)
<b>01.관리직(임원·부서장)</b>	<b>21. 교육직</b>	521 여행 서비스원 522 항공기·선박·열차 객실승무원 523 숙박시설 서비스원 524 오락시설 서비스원	821 금속관련 기계·설비 조직원 822 판금원 및 제관원 823 단조원 및 주조원 824 용접원 및 용접기 조직원 825 도장원 및 도금원 826 비금속제품 생산기계 조직원
011 의회의원·고위공무원 및 기업 고위임원 012 행정·경영·금융·보험 관리자 013 전문서비스 관리자 014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 관리자 015 영업·판매·운송 관리자 016 건설·채굴·제조·생산 관리자	211 대학 교수 및 강사 212 학교 교사 213 유치원 교사 214 문리·기술·예능 강사 215 장학관 및 기타 교육 종사자	<b>53. 음식 서비스직</b>	<b>83. 전기·전자 설치·정비·생산직</b>
<b>02. 경영·행정·사무직</b>	<b>22. 법률직</b>	531 주방장 및 조리사 532 식당 서비스원	831 전기공 832 전기·전자 기기 설치·수리원 833 발전·배전 장치 조직원 834 전기·전자 설비 조직원 835 전기·전자 부품·제품 생산기계 조직원 836 전기전자 부품·제품 조립원
021 정부행정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022 경영·인사 전문가 023 회계·세무·감정 전문가 024 광고·조사·상품기획·행사기획 전문가 025 정부행정 사무원 026 경영지원 사무원 027 회계·경리 사무원 028 무역·운송·생산·품질 사무원 029 안내·고객상담·통계·비서 및 기타 사무원	221 법률 전문가 222 법률 사무원	<b>54. 경호·경비직</b>	<b>84. 정보통신 설치·정비직</b>
<b>03. 금융·보험직</b>	<b>23. 사회복지·종교직</b>	541 경호·보안 종사자 542 경비원	841 정보통신기기 설치·수리원 842 방송통신장비 설치·수리원
031 금융·보험 전문가 032 금융·보험 사무원 033 금융·보험 영업원	231 사회복지사 및 상담사 232 보육교사 및 기타 사회복지 종사자 233 성직자 및 기타 종교 종사자	<b>55. 돌봄서비스직(간병·육아)</b>	<b>85. 화학·환경 설치·정비·생산직</b>
<b>1. 연구직 및 공학 기술직</b>	<b>24. 경찰·소방·교도직</b>	550 돌봄 서비스 종사자	851 석유·화학물 가공장치 조직원 852 고무·플라스틱 및 화학제품 생산기계 조직원 및 조립원 853 환경관련 장치 조직원
<b>11. 인문·사회과학 연구직</b>	240 경찰관, 소방관 및 교도관	<b>56. 청소 및 기타 개인서비스직</b>	<b>86. 섬유·의복생산직</b>
110 인문·사회과학 연구원	<b>25. 군인</b>	561 청소 종사자 562 세정원 및 방역원 563 가사 서비스원 564 검침·주차관리 및 기타 서비스 단순 종사자	861 섬유 제조·가공 기계 조직원 862 패턴사, 재단사 및 재봉사 863 의복 제조원 및 수선원 864 제화원, 기타 섬유·의복 기계 조직원 및 조립원
<b>12. 자연·생명과학 연구직</b>	<b>3. 보건·의료직</b>	<b>6. 영업·판매·운전·운송직</b>	<b>87. 식품가공·생산직</b>
121 자연과학 연구원 및 시험원 122 생명과학 연구원 및 시험원	<b>30. 보건의료직</b>	<b>61. 영업·판매직</b>	871 제과·제빵원 및 떡제조원 872 식품 가공 기능원 873 식품 가공 기계 조직원
<b>13. 정보통신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b>	301 의사, 한의사 및 치과의사 302 수의사 303 약사 및 한약사 304 간호사 305 영양사 306 의료기사·치료사·재활사 307 보건·의료 종사자	<b>62. 운전·운송직</b>	<b>88. 인쇄·목재·공예 및 기타설치·정비·생산직</b>
131 컴퓨터하드웨어·통신공학 기술자 132 컴퓨터시스템 전문가 133 소프트웨어 개발자 134 네트워크 시스템 개발자 및 정보보안 전문가 135 데이터 전문가 136 정보시스템 및 웹 운영자 137 통신·방송·송출 장비 기사	<b>4.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b>	621 항공기·선박·철도 조종사 및 관제사 622 자동차 운전원 623 물품이동장비 조직원(크레인·호이스트·지게차) 624 택배원 및 기타 운송 종사자	881 인쇄기계·사진현상기 조직원 882 목재·펄프·종이 생산기계 조직원 883 가구·목제품 제조·수리원 884 공예원 및 귀금속세공원 885 악기·간판 및 기타 제조 종사자
<b>14. 건설·채굴 연구개발직 및 공학 기술직</b>	<b>41. 예술디자인방송직</b>	<b>7. 건설·채굴직</b>	<b>89. 제조 단순직</b>
140 건축·토목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411 작가·통번역가 412 기자 및 언론 전문가 413 학예사·사서·기록물관리사 414 창작·공연 전문가(작가, 연극 제외) 415 디자이너 416 연극·영화·방송 전문가 417 문화·예술 기획자 및 매니저	<b>70. 건설·채굴직</b>	890 제조 단순 종사자
<b>15. 제조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b>	<b>42. 스포츠레크리에이션직</b>	701 건설구조 기능원 702 건축가감 기능원 703 배관공 704 건설·채굴 기계 운전원 705 기타 건설 기능원(채굴포함) 706 건설·채굴 단순 종사자	<b>9. 농림어업직</b>
151 기계·로봇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52 금속·재료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53 전기·전자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54 화학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55 에너지·환경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56 섬유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57 식품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58 소방·방재·산업안전·비파괴 기술자 159 제도사 및 기타 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420 스포츠레크리에이션 종사자	<b>8. 설치·정비·생산직</b>	<b>90. 농림어업직</b>
	<b>5.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직</b>	<b>81. 기계 설치·정비·생산직</b>	901 작물재배 종사자 902 낙농·사육 종사자 903 임업 종사자 904 어업 종사자 905 농림어업 단순 종사자
	<b>51. 미용·예식 및 반려동물 서비스직</b>	811 기계장비 설치·정비원(운송장비 제외) 812 운송장비 정비원 813 금형원 및 공작기계 조직원 814 냉·난방 설비 조직원 815 자동조립라인·산업용로봇 조직원 816 기계 조립원(운송장비 제외) 817 운송장비 조립원	

